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	2020. . .	
연월일	(제 회)	

검 사 의 보 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추 미 애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공무원보수규정」(대통령령 제30347호, 2020. 1. 7. 공포·시행)의 개정으로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.8% 인상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검사의 봉급을 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「공무원보수규정」에 따른 인상분 반영 위해 [별표 2] 검사의 봉급표 개정

(1) 「공무원보수규정」 개정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봉급액을 인상·조정

(2) 다만,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[별표 2]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[별표 2]를 적용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입법예고(2020. 2. 20 ~ 3. 2)

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수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) [별표 2]의 개정규정은 2020. 1. 1.

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. 다만 3호봉 이상의 검사 및 검찰
총장에 대해서는 [별표 2]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
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.

별지

[별표 2]

검 사 의 봉 급 표(제7조 관련)

(월지급액, 단위 : 원)

직 명	호 봉	봉 급 액
검찰총장		8,431,600
검찰총장 외의 검사	17	8,419,300
	16	8,403,100
	15	7,926,400
	14	7,452,000
	13	7,026,400
	12	6,667,300
	11	6,494,100
	10	6,290,400
	9	5,950,000
	8	5,544,400
	7	5,194,700
	6	4,866,500
	5	4,549,800
	4	4,230,900
	3	3,922,700
	2	3,615,300
	1	3,208,600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검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212